

창업교육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30.)

1. 창업교육 업무

- 가.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기획
- 나. 창업 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수업 등 창업 관련 학사업무 수행
- 다. 창업자 대입 특별전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라. 창업융복합전공제 개발, 창업강좌 개설 등 관련 학사제도 수립·시행
- 마. 창업 동아리 운영·지원,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 창업 마인드 확산 업무
- 바. 창업 인턴제 시행, 창업 현장실습 제도 운영
- 사. 창업 학·석사 연계과정 개발
- 아. 창업교육관련 수요조사 및 환류
- 자. 그 밖의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교육 관련 업무

2. 창업사업 업무

- 가. 학생 창업 지원 업무
- 나. 교원 및 직원 창업 지원 업무
- 다.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업무
- 라. 벤처 연계형 창업 및 창업보육 사업과 연계한 지원 업무
- 마. 글로벌 창업 지원 업무
- 바. 그 밖의 창업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센터에 창업교육부를 둔다.(개정 2016. 6. 1., 2017. 5. 15.)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대학 전체의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관련 기획, 운영, 평가, 관리 등을 전담한다.

③ 창업교육부는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6. 1.)

④ (삭제 2016. 6. 1.)

⑤ 센터의 행정업무는 창업지원단 행정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 6. 1., 2017. 5. 15.)

⑥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 중점교원,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6. 1.)

⑦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4. 30.)

제4조(임면)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

② 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6. 6. 1.)

③ (삭제 2017. 5. 15.)

④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원,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6. 1., 2017. 5. 15.)

제3장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상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 교원인사부처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학인재원 부원장, 창업지원단 부단장, 글로벌창업대학원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7. 1.)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재정 및 일반 행정

제10조(재정) 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 기업 및 기관 지원금
3. 교비 및 산학협력선도사업 지원금
4. 창업 사업 수입
5. 그 밖의 수입

제11조(예·결산과 사업)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 결산과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